

5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 (2021.04.30)

차 례

1. 공급일정 6
2. 신청관련 문의
3. 공급현황 7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2
5. 신청접수 안내 23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24
7. 심사서류 제출안내 25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9
9.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30
10.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30
11. 신청시 유의사항 32
12. 단지 유의사항 안내 34
13. 임대주택 위치 45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47



2021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

(2021, 04, 30, 공고)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은 준공 후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며,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주택공급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함)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됩니다.
 -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 생업용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125cc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미만)를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생업용자동차

-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화물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 2021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 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공사 방문 인터넷 접수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 단지의 준공 일정 등으로 인하여 계약 및 입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소유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 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대상자	접수일정	인터넷청약 주소
대학생, 청년, 신 혼부부	2021.05.12.(수)~ 05.14.(금) 10:00 ~ 17:00	www.i-sh.co.kr/app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청약은 실시하지 않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 2021년 11월 ~ 2022년 1월

○ 신규공급 단지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입주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 12~13시)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전자팸플릿(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2021년 제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

③ 공급현황

■ 신규공급: 170호

	공급			면적	(m²)			
단지명	유형	공급 호수	공급	면적	기타	합 계	입주 (예정)	난방 방식
	(m²)	-,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용	입계	(*110)	
계		170						
	16	15	16.90	6.99	3.66	27.55		
홍대 크리원	18	4	18.83	7.79	4.08	30.70	2021 12	개별난방
(마포구 상수동 355-2)	00	4	30.07	12.43	6.52	49.02	2021.12	
	30	4	30.81	12.74	6.67	50.22		
제이스타 상봉	17	4	17.75	11.15	11.39	40.29	0004.40	7111411 1111
(중랑구 상봉동 109-34)	31	2	31.65	18.79	20.31	70.75	2021.12	개별난방
우장산역 해링턴플레이스	17	47	17.74	9.30	12.13	39.17	2022.01	711111 1111
(강서구 화곡동 1013-3)	23	40	23.68	11.85	16.19	51.72	2022.01	개별난방
	14	10	14.07	8.27	3.83	26.17		
천호역 한강리슈빌	14	2	14.10	8.29	3.86	26.25		
(강동구 천호동 458-3)	19	18	19.67	11.46	5.36	36.49	2022.01	개별난방
	32	18	32.72	18.83	8.93	60.48		
	33	2	33.52	18.83	9.14	61.49		

■ 재공급: 105실

	공급	공급		면적(m²)				
단지명	유형 호수		공급	기타	- L-31	입주 (예정)	난방 방식	
	(m²)	(실)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용	합계	(416)	87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39B (셰어형)	105	39.81	19.49	28.72	88.02	2021.11	개별난방

- 신규 공급단지는 역세권청년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단지 평형별 평면도 및 유의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셋째 자리의 처리 방식 차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공급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감리회사	구조
마포구 상수동 355-2	서울특별시	도듬건설주식회사	대지건축사사무소	철근콘크리트
중랑구 상봉동 109-34	서울특별시	이에스개발(주)	㈜새울종합건축사	철근콘크리트
강서구 화곡동 1013-3	서울특별시	효성중공업(주)	㈜명광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
강동구 천호동 458-3	서울특별시	㈜케이알산업	㈜청구건축사사무소	철근콘크리트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서울특별시	㈜호반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철근콘크리트

■ 공급대상 및 임대금액

○ 신규공급 : 170호

	공급	평면	신청자 공급호			임디	배조건		TI -1	최대	전환시	
단지명	유형	유형	신청	공급	임다	보증금(천	년원)	월임	전환 구분	임대조건		
	(m²)	(m²)	자격	호수	계	계약금 (20%)	잔금 (80%)	대료 (원)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대학생	6	29,920	5,984	23,936	97,000	최대	39,620	48,500	
	16 16.9	16.9	-1170		20,020		20,000	07,000	최소	14,960	128,100	
		10		청년	9	31,680	6,336	25,344	103,000	최대	41,980	51,500
						,	,	,	,	최소	15,840	136,000
홍대 크리원			대학생	2	33,320	6,664	26,656	108,000	최대	44,120	54,000	
(마포구 상수동	18	18.83							최소	16,660	142,700	
355-2)			청년	2	35,280	7,056	28,224	114,000	최대	46,680	57,000	
									최소	17,640 78,660	150,700 96,500	
		30.07	신혼	4	59,360	11,872	47,488	193,000	최대 최소	29,680	254,800	
	30		부부						최대	80,760	99,000	
		30.81		4	60,960	12,192	48,768	198,000	최소 최소	30,480	261,500	
									 최대	33,350	43,000	
			대학생	1	24,750	4,950	19,800	86,000	기 최소	12,370	111,700	
제이스타 상봉	17	17.75							최대	35,300	45,500	
(중랑구 상봉동 109-34)			청년	3	26,200	5,240	20,960	91,000	최소	13,100	118,200	
100 0 17	0.4	04.05	 신혼		10.110	0.000	00.550	470.000	최대	66,740	86,500	
	31	31.65	부부	2	49,440	9,888	39,552	173,000	최소	24,720	224,500	
			디르니티	10	20, 420	E 604	22.726	00,000	최대	38,320	49,500	
	17	17.74	대학생	18	28,420	5,684	22,736	99,000	최소	14,210	128,600	
우장산역	17	17 17.74	첫 1 크	29	30,090	6,018	24,072	105,000	최대	40,590	52,500	
해링턴 플레이스			청년	29	30,090	0,010	24,072	105,000	최소	15,040	136,300	
(강서구 화곡동			대학생	16	36,990	7,398	29,592	129 000	최대	49,890	64,500	
1013-3)	1013-3) 23	23.68	네익겡	10	30,990	7,390	29,592	129,000	최소	18,490	167,500	
	20	23.08	청년	24	39,160	7,832	31,328	137,000	최대	52,860	68,500	
			01	∠ +	55,100	7,002	01,020	107,000	최소	19,580	177,700	

	공급	평면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저하	최대전환시										
단지명	유형	유형	신청	공급	임대	보증금(천	년원)	월임	- 전환 구분	임다	 조건									
	(m²)	(m²)	자격	호수	계	계약금 (20%)	잔금 (80%)	대료 (원)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FII=LIII F 22 100 C 22C 20 F44 00 000	99,000	최대	43,080	49,500														
		14.07	대학생	5	33,180	6,636	26,544	99,000	최소	16,590	133,500									
	14 14.1	14.10	청년	7	35,130	7,026	28,104	105,000	최대	45,630	52,500									
			6L	/	00,100	7,020	20,104	100,000	최소	17,560	141,600									
천호역			디르니	7	4E 420	0.004	26.226	126,000	최대	59,020	68,000									
한강리슈빌 (강동구 천호동	10 1	: 10	10.07	대학생	7	45,420	9,084	36,336	136,000	최소	22,710	183,300								
458-3)	19	9 19.67	19.67	19.67	19.67	19.67	19.67	19.67	19.67	19.67	19.67	구기크	11	40,000	0.010	00.470	144.000	최대	62,490	72,000
			청년	11	48,090	9,618	38,472	144,000	최소	24,040	194,100									
	22	32 32.72		10	04 400	16 006	67 504	254,000	최대	109,880	127,000									
	32		신혼	18	84,480	16,896	67,584	254,000	최소	42,240	342,000									
	22	00.50	부부	2	06 E60	17 010	60.249	260,000	최대	112,560	130,000									
	33	33.52			86,560	17,312	69,248	260,000	최소	43,280	350,100									

○ 재공급 : 105실

	공급	평면	신청지 공급:			임대	조건			최대	전환시
단지명	유형	유형	신청	공급	임다	보증금(천	년원)	월임	전환 구분	임대조건	
	(m²)	(m²)	자격	호수 (실)	계	계약금 (20%)	잔금 (80%)	대료 (원)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39B				청년 (셰어형 68 24,480 4,896 19,584	84,000	최대	32,880	42,000		
용산베르디움 프렌즈		39B	-남)	3 00	24,400	4,090	19,504	04,000	최소	12,240	109,500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390	청년 (셰어형	37	24,480	4,896	19,584	84,000	최대	32,880	42,000
			-여)	31	24,400	4,030	19,004	04,000	최소	12,240	109,500

- 각 타입 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구분 없이 신청접수합니다.
- 각 평형 타입별, 계층별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용산구 한강로2가 2-350) 39B(셰어형)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방) 기준입니다.
- 용산 베르디움 트렌즈(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39B(셰어형)는 각 호당 2인이 입주하며, 방(방1, 방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며, 일부 각 호는 최초 신규공급에 따라 1인이 이미 입주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단지·평형·신청자격별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임대보증금의 80%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지역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 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 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5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 인근에 위치한 도로 및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가 표시된 약도는 공고문 4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가.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 현재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구 분 소 득 기 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1701414	대학생 계층 (본인 및 부모)	3,589,957원						
가구원수별 가구당	청년 계층	이하	5,475,042원 이하	7,488,624원 이하	8,513,04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8,872,376원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 ,	, ,				
	※ 7인가구(9,333,628원 이하), 8인가구(9,794,879원 이하)							

소 득

- *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입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
- * **대학생 계층**은 <u>신청자 본인 및 부모</u>의 소득만 해당됩니다. (이혼한 부모의 경우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 * **청년 계층**은 <u>해당세대</u>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해당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며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본인만을 말합니다.)
-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u>해당세대</u>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2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29,200만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은 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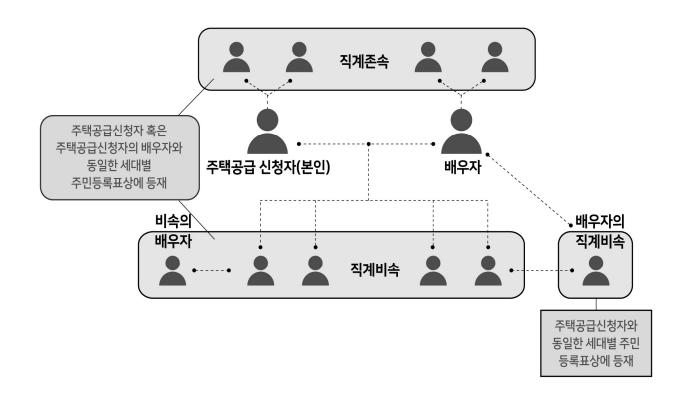
구	분	자산 기준
총 자 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을 말합니다.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며, 단, 아래 토지는 제외됩니다.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 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합니다.(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대기환경보전법」제 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기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구	분	자산 기준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총 자산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 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무주택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신혼부부계층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 원에 포함되지만,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 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등 록증이 있는 외국인만 포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함.
 - ※ 대학생 및 청년계층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 1주택(실)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2인이 각각 1주택(실)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신혼부부 계층의 순위는 제외)
- 입주자 선정은 계층별 소득순위를 우선적용하고 지역순위에 따르며, 동일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추첨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의 상실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계층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대학생 계층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⑪와 ②~⑤, 취업준비 생은 ①-⑪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자, 다음학기에 **입학예정**인자, 다음학기에 **복학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될 것
- ①-④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 05. 01. ~ 2002. 04. 30.)
-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 ④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⑤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또한, 당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인정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 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등)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 원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인정 고등 · 고등기술 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제55조의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고졸검정고시 등)
기 타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은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부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부모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의미합니다.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2021.04.30.)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 조치됩니다. ● 대학교 졸업유예자는 대학생 계층 중 대학생의 일반자격에 해당되며, 졸업유예자가 취업 준비생으로 신청할 시 결격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순 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소득의 10 월평균소득	•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① 소 득 순위	1인	2,991,631원 이하	3,290,794원 이하	3,589,957원 이하			
	2인	4,562,535원 이하	5,018,789원 이하	5,475,042원 이하			
	3인	6,240,520원 이하	6,864,572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8,133,012원 이하	8,872,376원 이하			
	●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2순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② 지역순위	3순위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복학예정 또는 졸업유예중인 <u>대학교의</u> 위 순위별 지역에 있는 경우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내)의 <u>거주지</u> 가 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③ 동일 순 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 <u>'대학교의 소재지'</u>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하며, <u>'다음 학기'</u>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합니다.
- ※ <u>'거주지'</u>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청년 계층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기준)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 05. 01. ~ 2002. 04. 30.)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④ <u>해당세대</u>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 을 것
- ※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단, 당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는 <u>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u>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순 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소득의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구원수별 가구당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의 100% 월평균 소득의 110% 월평균 소득의 120% ① 소득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1인 2.991.631원 이하 3.290.794원 이하 3.589.957원 이하 2인 4,562,535원 이하 5,018,789원 이하 5,475,042원 이하 361 6,240,520원 이하 6.864.572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8,133,012원 이하 8,872,376원 이하

순 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위 소득받	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순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② 지역순위	2순위	2순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 청년의	<u>거주지</u> 또는 <u>소득활동중인 사업장</u> 이 위 순위별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③ 동일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 <u>'거주지'</u>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u>'소재하는 사업장'</u>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활동중인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기준)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u>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②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②,④~⑥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② 신혼부부는 혼인 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 05. 01. ~ 2002. 04. 30.)
- ③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 ⑤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대표신청자(계약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나,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입주자격 연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 ①-②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이내인 자만 신청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2,555일 이내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이 2,556일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 미충족으로 결격처리 됩니다.
 - ①-④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1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2인이 각각 1주택(실)을 신청할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①-④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입주 신청 시 예비신혼 부부 당사자가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명단(세대주와의 관계포함)이 추후 입주 시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고일 기준 외국인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에도 신청 불가)
- ※ 신혼부부계층 신청 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발급 가능한 한가지를 추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순 위	입 주 자 선 정 순 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소득기준				
① 소득순위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10%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순위)			
	1인	2,991,631원 이하	3,290,794원 이하	3,589,957원 이하			
	2인	4,562,535원 이하	5,018,789원 이하	5,475,042원 이하			
	3인	6,240,520원 이하	6,864,572원 이하	7,488,624원 이하			
	4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5인	7,094,205원 이하	7,803,626원 이하	8,513,046원 이하			
	6인	7,393,647원 이하	8,133,012원 이하	8,872,376원 이하			
	입주자를 선정						
	1순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그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0				
② 지역순위	2순위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	K지 않는 지역에				
	- (예비)신혼	부부의 <u>거주지</u> 또는 <u>소</u> 독	<u>특활동중인 사업장</u> 이 위 순위	l별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③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 신청자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활동소재지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 '<u>거주지'</u>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u>'소재하는 사업장'</u>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실제 업무근거지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활동중인 사업장의 소재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 되지 않습니다.

5 신청접수 만내

■ 인터넷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24시간 신청가능(마감시간 내)" -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요건(해당신청자격, 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현주소지 최종전입일 등) 서류심사 시 신청자격 결격처리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해 주십시오.)

→ 본인 착오로 인해 기입한 내역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인터넷 신청

- 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u>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u>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한 개인용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 및 소지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로그인 (인증서 본인확인)	임대주택 - 공고선택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추가사항 입력	인증서 인증확인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신청시간

- 신청기간은 2021. 05. 12.(수) 10:00 ~ 05. 14.(금) 17:00이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 ※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마감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안내

구 분	내 용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1. 05. 31.(월) 14:00 이후 - 조회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서류심사대상자 조회하기, ARS 조회(1600-3456)를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신청순위 순서대로 3배수 내외로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동일 순위의 경우 무작위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1.06.07.(월) ~ 2021.06.14.(월)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4.(월) 소인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소지가 있어 인정하지 않으므로 제출불가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역세권청년주택 담당자 앞

7 심사서류 제출안내

- ※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 "대학생 계층(신청자 본인)"및"청년 계층(신청자 본인)"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 04. 30.)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사업자등 록증 사본은 기존 발급분 제출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23456-1*****(X)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시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 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되며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의서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제출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 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 서명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자녀이름 정자로 기재) • 동의방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이 한글 정자 서명 또는 인감날인 ※ 금융정보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 인감증명서 첨부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였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역세권 청년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시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는 심사서류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후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예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 공급대상자별 개별 제출서류

공급대상		글 세울시 대 세출서류	발급처
	대학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입학 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복학예정자 각서(공사양식) 졸업유예자: 졸업유예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서울주택도시 공사홈페이지
대 학 생	취업 준비생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계 층	해당자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발급) : 이혼사실 확인용도 - 부 또는 모의 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해당 부모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제출 - 실질적 부양자 확인 각서(공사양식) 제출	
청년 (셰어형) 포함 계층	해당자	 ▶ 거주지가 아닌 '소득 활동 소재지'가 지역순위 1,2,3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순위 : "본인 소득활동지"로 신청한 자만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가능 ②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등 대체) ③ 재직증명서 ● 위의 해당하는 자 중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 가입자의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그 외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 실제 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국세청
신혼 부부 계층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u>상세증명서</u> 로 발급)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미혼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대표신청자, 예비 배우자 신분증 사본 역세권 청년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공사양식) 	●주민센터
신혼부층	예비 신혼 부부	 ● 역세권 청년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위임장(대표신청자에게 위임 - 위임자:예비배우자, 수임자:대표 신청자) ● 역세권 청년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와 위임장 상에 <u>서명 방식에 맞게 제출</u> - 인감날인 시 :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 각각의 본인발급분 인감 증명서 - 자필서명 시 :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 각각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 및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일해야 함. ※ 전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불가 	●서울주택 도시공사 홈페이지
		•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입주 시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 이 무효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	 ▶ 거주지가 아닌 '소득 활동 소재지'가 지역순위 1,2,3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순위: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의 "소득활동지"로 신청한 자만 아래의 서류를 제출] 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또는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② 공고일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대체) ③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해당 세무서)
		 위의 해당하는 자 중 <u>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 가입자</u>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발급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그 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 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 실제 업무 근거지가 다른 경우 실제 업무 근거지가 표시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제출 (※실제 근무지 표시된 경우 인정) 	

○ 기타서류(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신 청자본인)	1부
생업용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생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 활동 등에 참여중임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제출(생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5페이지 참고)	1부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125cc이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 증 사본	1부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확인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임신진단서 외 서류 인정불가)	1부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충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간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2, 09, 30.(금)까지입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일 : 2021.10.01(금) 16:00 이후
- **당첨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ARS 당첨자 조회(1600-3456)
 - 당첨자의 인적사항(개명) 및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등 변경 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2021.10.20(수) ~ 2021.10.22(금) 10:00~17:00(단, 점심시간 12:00~13:00)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방문계약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

■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 서명 가능) ③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 허증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계약금 납부영수증 ④ 위임장(공사양식) ⑤ 대리인 신분증

-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소득·자동차·자산(금융자산 포함)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ទា	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 신 혼부부 계층(예비신 혼부부 포함)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재계약 시 계층변경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공실에 대한 예비자가 없는 경우 가능)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역세권청년주택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후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 절차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학생 계층 뿐만 아니라 새로 변경한 계층인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계층으로 입주한 후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어 계층 변경절차 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재계약이 암묵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청년 계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으로도 재청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주기간 ┃ ■ 재청약 기준

-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 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 2)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내에서 대학소재지, 소득 근거지,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청년 계층 및 신혼부부(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또는 예비배우자)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대학생계층의 대학생이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산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 다만, 대학생 계층의 경우"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졸업유예 중인 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청년 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관련항목	유의사항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거주 중 소득, 자산기준, 무주택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 자산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준용 * 임대차 기간 동안 전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자동차 미소유(미운행)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시 유미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심사서류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 자가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합니다.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 신청한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해당 관할지역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할지역센터에서 신청가능)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전액 환불됨
예비입주자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은 당첨된 날부터 4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지정종료일 이내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 후 전환할 경우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지정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공공임대주택 거주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입주민의 주거급여임차료 분을 임대인(서울주택도시공사)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신청하지 않은 주거급여수급자도 해당)
	- 매월 납부해야 하는 임차료에서 본인의 주거급여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납부 금액이 없을 수 있음)
	-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주거급여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단지 유의사항 안내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 서울시 및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고자 주차장의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 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사용), 생업용자동차,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오토바이(125cc 이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세미만)를 위한 유자녀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 시 표기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계획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발코니면적에 따라 동일 전용면적이더라도, 실 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부여되는 지번, 도로명주소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사용검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변경),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실제와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에 따라 게시된 전자팸플릿의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보행로, 야외 운동공간, 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 옥상조경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경사로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장내경보등에 인접한 일부 동은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동별 배치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해당 단지만),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의 대피를 위한 공간이므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공간 내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높이,용량,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개조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귀책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겨울철 입주 시에는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인해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청년지원시설 등)의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공동주택 운영관 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관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특정 통신사와 단독서비스로 가입·설치되어 별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대 크리원(마포구 삼수돔 355-2) ■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6호선 상수역 3번출구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27호, 공공지원민간임대 68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36 2021년 제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모집공고

■ 주택 환경

세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세탁기, 에어컨(천정형), 냉장고, 옷장, 신발장	
쿡탑	전기 2구	
	단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내용(위치)
	자주식, 기계식 주차 : 총 41대	
주차장	기계식 : 39대(나눔카 16대 포함)	지상1층
	자주식 : 2대(장애인 주차 2대 포함)	
 자전거보관소	주차대수 : 30대	지상1층
재활용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함	지상1층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실, 경비실/방재실	지하1층~지상1층
커뮤니티시설	북카페, 코인세탁실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지상1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하1층
통합실외기실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각 층(2층~15층) 좌우측 복도 끝
엘리베이터	15인승 3대(주거용: 2대)	

-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쿡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전자팜플랫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옷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커뮤니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통합실외기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는 세대간 피난경계벽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총 3대(승용·비상용·화물용·장애인 겸용)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층(지상2층~15층)에는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41대 [자주식 2대(장애인: 2대), 기계식 3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커뮤니티 시설(북카페, 코인세탁실)이 계획되며,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이스타 상봉(중랑구 상봉동 109-34) ■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상봉역 근접지로서, 상봉역 4번 출구로부터 도보 5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6호, 공공지원민간임대 77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주택 환경

세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세탁기, 에어컨(천정형), 냉장고, 옷장, 신발장	·
쿡탑	가스 2구 또는 3구	
보일러실	보일러	
	단지내 부환 경	
구분	주요시설	내용(위치)
주차장	자주식 : 총 34대 (장애인주차대수 : 2대, 나눔카 : 6대포함)	지하2층, 지하1층
 자전거보관소	주차대수 : 26대	지상1층
관리사무소	관리실, 방재실	지상1층
재활용품 보관소	재활용품 보관소	지상1층
커뮤니티시설	북카페, 주민회의실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지상2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상1층
통합실외기실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각 층(2층~8층) 복도 끝
엘리베이터	13인승 1대	

-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쿡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전자팸플랫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열교환기, 가스쿡탑, 옷장, 신발장, 보일러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장애인겸용으로 총 13인승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1층, 지하2층에는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자주식 주차 총 34대 (장애인: 2대포함, 나눔카 6대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인하여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상8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장산역 해링턴플레이스(강서구 화곡동 1013-3)■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3동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3번 출구로부터 185m 이격한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강서로(너비 30m, 왕복 6차선)를 전면에 두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87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342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주택 환경

세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비트이 기저 미 기그	세탁기, 에어컨(천정형), 냉장고,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음식물 탈수기, 옷장, 신발장	
쿡탑	가스 2구	
보일러실	보일러 및 실외기	
	단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내용(위치)
	자주식 : 총 259대	
주차장	(장애인주차대수 : 8대,	지하3~지하1층
	나눔카 : 27대 포함)	

 자전거보관소	주차대수 : 70대	지상1층
관리사무소	관리실, 방재실	지상1층
 재활용품 보관소	재활용품 보관소	지상1층
커뮤니티시설	공동작업실,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1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상1층
엘리베이터	17인승/20인승 7대(주거용: 5대)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쿡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전자팸플랫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쿡탑, 음식물 탈수기, 옷장, 신발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겸용으로 총 7대[17인승 4대, 20인승 3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층(지상3층~지 상15층)에는 4대[17인승 2대, 20인승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3층~지하1층에는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자주식 주차 총 259대 (장애인: 8대포함, 나눔카 27대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인하여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지상1~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2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편함, 재활용품 보관소, 관리실은 지상1층, 관리사무소는 지상2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천호역 한강리슈빌(강동구 천호동 458-3)■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8호선 천호역 인근으로서, 역 1번 출구로부터 도보 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5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73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택 환경

-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빌트인 가전 및 가구	세탁기, 에어컨(천정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옷장, 신발장	
<u></u> 쿡탑	전기 2구	
	단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내용(위치)
주차장	자주식, 기계식 주차 : 총 74대 기계식 : 58대(나눔카 8대 포함) 자주식 : 16대(장애인 주차 3대 포함)	지하2층~지하1층
 자전거보관소	주차대수 : 8대	지상1층
재활용 분리수거장	재활용 분리수거함	지상1층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실, 방재실	지상1층, 지하1층
커뮤니티시설	북카페, 육아방, 휴게실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지상2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하1층
통합실외기실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각 층(2층~15층) 좌우측 복도 끝
엘리베이터	3대(17인승)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쿡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전자팜플랫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옷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층에는 커뮤니티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 방문객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실외기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계단실, 승강기,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겸용으로 17인승 총 3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13층에는 2대, 지상14층~옥탑층

까지는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2층~지하1층에는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타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74대 [기계식 58대, 나눔카 8대 포함, 자주식 16대(장애인: 3대 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 1층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상 2층에는 북카페, 육아방, 휴게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용산구 한강로2가 2-350)■

■ 단지 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4호선·6호선 삼각지역 근접지로서, 역 8번 출구로부터 도보 20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 323호(421실), 공공지원민간임대 763호(805실)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주택 환경

세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빌트인 가전	세탁기, 에어컨(천정형), 냉장고	
 쿡탑	전기 2구	
보일러실	보일러 및 피난경계벽	
	단지내부환경	
구분	주요시설	내용(위치)
주차장	자주식 : 687대 (장애인주차대수 : 26대)	지하1층~지하7층
자전거보관소	주차대수 : 340대	지상1층
재활용 분리수거함	재활용 보관창고, 쓰레기보관소	지하1층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실,경비실,관리사무소,방재실	지하1층, 지하3층, 지상1층, 지상3층
	NPO공유오피스,	
커뮤니티시설	주거복지&청년월세센터,	지하1층, 지상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지상2층
무인택배보관함	무인택배보관장소	지하1층
통합실외기실	세대 실외기 보관장소	각 세대별 발코니
엘리베이터	15인승 17대	

[※] 단지 내부 환경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세탁기의 경우 쿡탑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전자팜플랫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쿡탑, 옷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7B(셰어형)타입은 침실1, 침실2 간 창문, 발코니 등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자팜플랫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첨을 통한 실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총 17대(승용·비상용·화물용·장애인 겸용)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687대 [자주식 687대(장애인: 26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한정된 유효높이(지하1층:2.7M 지하2층~지하7층 통로 유효높이 2.3M, 주차공간 2.1M이 상)로 일부 생업용 자동차는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장이 건축물과 인접하게 설치되어 있어(지하2층 ~ 지상 18층),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지하1층,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는 1층 1개소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처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T4848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주요구조부 재사용	-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비내력벽 재사용	_

3) 환경관련등급

<u>0/ 1/01/10/1</u>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수자원 절약	우수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 용금지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 의 조성수준		*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보행자 도로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ı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교통부하저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생태면적율	**
* 71	자연지반 녹지율	*
조경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1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실내공기질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 성	*
새하 페기모 ㅂ긔ᄉ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ILSIM OFFICI 베크	전용부분	*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 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3321	감지 및 경보설비	*
화재·소방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피난안전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3 임대주택 위치



구 분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위치	용산구 한강로2가 2-350			
교통편	삼각지역(4호선,6호선) 8번 출구 도보 5분			
약도	용산경찰서 남영역			

2021.04.30.

5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계층' 및 '청년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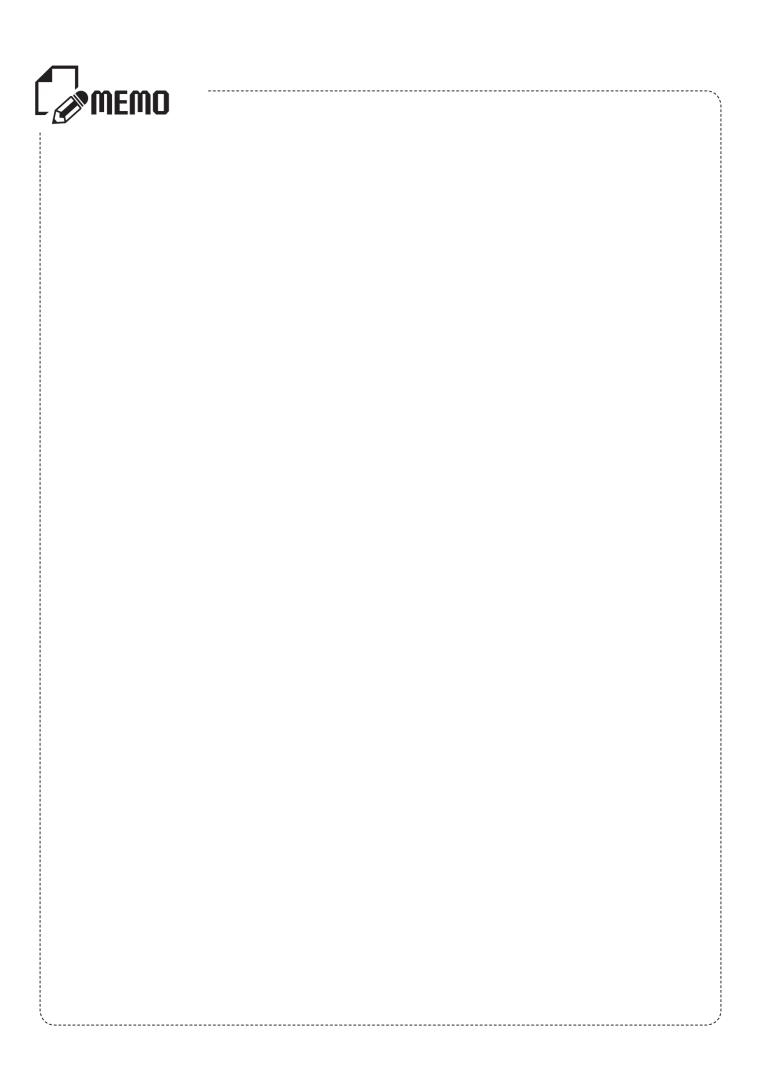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 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 (시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 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 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 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 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 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 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총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 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구세	임대보증금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주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일 경우 -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 상가 등의 임차인으로 전·월세를 내는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해당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통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i>,</i>	MEMO
<u> </u>	لملم

\$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